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3-17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39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1. A
	2. B
	3. C
	4. D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장
	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충기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구합588 판결
변 론 종 결	2020. 1. 17.
판 결 선 고	2020. 2. 7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3-17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7. 9. 11.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83,687,130원의 부과처분 중 10,431,230원을 초과하는 부분, 농어촌특별세 7,071,440원의 부과처분 중 968,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가. 피고 주장 요지

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2015. 12. 3.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인 2015. 11. 19.이다.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 A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인 2015. 11. 14. I에게 이 사건 주식 31,001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, 2015. 11. 19. 이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67%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그 주식보유비율이 2015. 11. 23. 67.22%로, 2016. 9. 8. 70%로, 2016. 10. 24. 81.11%로 각 순차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, 원고들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3-17

그에 따른 취득세 등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갑 제19호증,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회사는 2015. 12. 3.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인 주식회사 O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36억 원을 지급하고,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회사가 2015. 11. 19.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찬돈

판사 곽병수

판사 손병원